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25
----------	-----

2025. 1. 21.(화)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이동우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5년 1월 10일

다. 회부일자 : 2025년 1월 14일

라. 상정일자 : 2025년 1월 21일

- 제4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동우 의원)

가. 제안사유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은 약 7,600명이며, 이들의 지역사회 정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가 2023년 8월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실효성이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일부 보완이 필요함
- 이에 고려인 주민 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고려인 주민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자문위원 또는 협력관 위촉, 고려인의 날 지정 및 초청행사 등 기념행사,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안정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고려인 주민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안 제7조)(신설)
- 실태조사(안 제8조)(신설) 및 지원사업(안 제9조)(일부정비)
- 고려인 주민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10조)(신설)
- 자문위원 또는 협력관 운영(안 제13조)(신설)
- 충청북도 고려인 주민의 날 지정, 초청행사 등 기념행사 및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14조 및 안 제15조)(신설)

3. 검토보고 요지

가. 제출배경

- 고려인동포는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 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했다가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된 우리 동포이지만 그동안 소외되어 왔음
- 이에 2023년 7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에게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충청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했음
- 그러나 고려인 주민 지원에 관한 예산 미편성, 관계 부서의 관심 부족, 담당 부서 변경 등 정책추진이 미흡했으며, 조례 제정 당시 약 3,560명이던 고려인 주민이 2024년 9월 기준 약 7,650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여⁶⁾, 더욱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고려인 주민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고려인 주민의 증가, 중앙아시아 3국 방문 후 발굴한 정책 등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안정 등을 도모하고자 제안한 것임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는 목적 조문으로 현행 조례의 자구를 수정하여 조례의 목적을 더욱 명확히 하고 조례 지원 대상(이주 희망 고려인동포)을 추가·확대하려는 것임
- **안 제2조**는 전문개정을 통해 고려인동포와 고려인 주민을 구분하여 용어의 뜻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함
 - 안 제1조와 안 제5조에서 이주 희망 고려인동포를 설명하기 위해 용어의 뜻을 구분 것으로 판단되며, 그 내용이 적절함
- **안 제3조**는 자구수정을 통해 현행 ‘주민’이란 용어를 ‘충청북도민’으로 명시하여, 고려인 주민과 혼동되지 않도록 개정하고, 약칭을 추가한 것으로 타당함
- **안 제4조**는 고려인 주민 정책에 관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현행 조례와 동일함
 - 다만, 2023년 7월 조례 시행 이후 예산 미반영 및 정책추진의 부진 등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음

6) 충청북도 시군별 고려인동포 증감 현황

구분	계	괴산	보은	영동	음성	제천	증평	진천	청주	충주
2023년 (6월)	3,554	-	-	-	337	30	31	812	2,266	78
2024년 (9월)	7,647	8	7	3	736	130	57	1,675	4,890	141
증감	+4,093	+8	+7	+3	+399	+100	+26	+63	+2,624	+63

- 따라서 전부개정을 계기로 고려인 주민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임

○ **안 제5조**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 제1항에서 ‘이주를 희망하는 고려인동포’를 추가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은 고려인동포의 지역 유입 촉진을 통해 도내 고려인 주민의 증가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짐

※ 이에 따라 안 제9조제2항을 신설하여 이주 희망 고려인동포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구체화함

- 또한, 제2항에서 지원 대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여, 정책 추진을 위해 도지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융통성을 부여하였음

○ **안 제6조**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따르도록 하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 이 조례가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의 특별 조례로서 외국인과 고려인 주민을 구분하여 규정 대상과 정책 적용의 중복과 규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 고려인 주민은 큰 틀에서는 외국인에 포함되지만, 재외동포로서 도민에 준한 정책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내용이 적절함

○ **안 제7조**는 고려인 주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 제1항에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제2항에서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정책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정책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 및 방법을 설정하여 실효성이 있는 정책추진을 하려는 것으로 신설의 필요성이 있음

- ※ 8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중 유일하게 계획 수립 관련 조문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시도와 차별성이 있음
- 또한, 시행계획을 매년 점검 및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것은 정책 추진의 객관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과 조례 목적달성을 위한 것으로 적절함

○ **안 제8조**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 고려인 주민 지원 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통해 고려인 주민의 실태, 정책의 문제점, 도민의 고려인 주민에 대한 인식, 정책 개발에 반영해야 할 사항 등 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 실현을 위해 필요한 규정임
- 특히, 제2항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안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도지사가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과 정책 수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타당함
- 또한,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여, 도지사에서 정책추진의 융통성을 부여함

○ **안 제9조**는 현행 제6조의 지원사업을 일부개정한 것으로 제1항의 사업 내용을 정비하고, 제2항에 ‘이주 희망 고려인동포’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가함

- 제1항에서 고려인 주민 지원사업에 제13호 ‘고려인 주민 관련 기념행사 등 지원’을 추가하고, 기존 사업내용에 관한 자구 수정과 사업 순서에 맞게 정비함

※ 제13호의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은 제14조(기념행사 등)에서 구체화하고 있음

- 제2항에서 ‘이주 희망 고려인동포’를 위해 이주 정착지원 사업 등의 사업을 명시하여 안 제1조와 안 제5조에서 규정한 지원대상의 확대와 이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내용이 적절하고 타당함

- 제3항은 사업수행을 위해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안 제10조**는 ‘고려인 주민 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 제1항에서 안 제9조의 고려인 주민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은 조례 목적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제2항에서 한국어교육, 일자리 정보제공, 통역 지원 등 지원센터의 수행업무와 기능을 규정하고, 제3항에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함
-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지원센터가 설치·운영 중인 지역은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남도 등 4개 개소로 각 지역별로 고려인 주민 지원의 필수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 충북형 고려인 주민 지원 정책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규정임

○ **안 제11조**는 안 제9조의 지원사업과 안 제10조의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전문인력 또는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 제1항은 현행 제7조와 동일하며,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여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

○ **안 제12조**는 현행 제8조의 내용과 동일하며, 고려인 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절함

○ **안 제13조**는 자문위원 또는 협력관 운영에 관해 신설하려는 것임

- 제1항에서 고려인 주민 지원 협력과 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자문위원 또는 협력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서 자문위원 또는 협력관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려는 것은 현장 전문가를 통한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음

- 제3항에서 이들의 역할, 위촉기간 등 운영에 관해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한 것은 안 제5조제2항, 안 제8조제3항, 안 제10조제3항과 체계와 규정방식을 통일한 것으로 도지사의 사업 시행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여짐

○ **안 제14조**는 고려인의 주민의 날 지정, 기념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 제1항에서 조려인 주민 통합과 역사적 민족성 기념을 위한 고려인 주민의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서 고려인 주민의 날에 고려인동포사회와 도민 간의 유대강화를 위해 기념행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특히, 제3항에서 제2항의 기념행사를 실시할 경우 국내외 고려인동포 초청행사를 실시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려인동포와의 유대감 형성과 수시 교류의 장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큼
- 또한, 제4항에서 제1항의 기념행사 외에 문화·예술행사 등의 각종 행사의 실시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과 적응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5조**는 국외 고려인 단체와 친선결연, 국제교류협력 및 국내외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노력에 관해 규정하려는 것으로 국내 대한고려인협회, 고려인 관련 단체, 국외 고려인협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고려인 주민 지원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안 제16조**는 현행 조례 제9조와 동일한 포상 규정을, **안 제17조**는 현행 조례 제10조와 동일한 명예도민에 관한 규정을 단순히 조문 이동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다. 종합 검토의견

○ (필요성) 이 조례안은 전부개정을 통해 고려인 주민 지원 정책을 더욱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고려인동포의 역사적 애환과 동포로서의 동질감 등 고려인 주민이 갖는 역사적 특수성과 상징성 등을 고려했을 때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 정책의 마련이 필요함
- 또한, 도내 고려인 주민이 조례 제정 당시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개정을 통한 정책의 보완이 필요성과 시급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판단됨

○ (타당성)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고려인 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이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타당함

-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을 도로 이주를 희망하는 고려인동포까지 확대하고, 고려인 주민 지원 정책추진을 위해 지원센터 설치·운영, 자문위원 등의 위촉, 기념행사 실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함

○ (법적합성) 상위 법령 위배 또는 부패영향평가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집행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한 사업내용 조정, 자구 수정 등 집행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고 조문의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과 충청북도 이주 희망 고려인동포의 지역사회 적응, 권익증진과 생활안정 도모 등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려인동포”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고려인 주민”이란 고려인동포로서 현재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고려인 주민의 지위) 고려인 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려인 주민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고려인 주민과 그 자녀로 하되, 도로 이주를 희망하는 고려인동포와 그 자녀를 포함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 이주 희망 고려인동포와 자녀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려인 주민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효과적인 고려인 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고려인 주민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추진 실적을 점검 및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 지원 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범위, 방법 및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수행할 수 있다.

1. 고려인 주민의 지위 및 처우 개선에 필요한 시책
2. 고려인 주민의 한국어 및 정보기술 교육 등 교육활동 지원
3. 고려인 주민에 대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지원
4. 고려인 주민의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등 생활편의 제공 지원
5. 고려인 주민의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지원
6. 고려인 주민의 문화·예술·체육행사 등 문화활동 지원
7. 고려인 주민의 자녀 돌봄 지원
8. 고려인 주민의 취업 및 창업 지원
9. 고려인 주민 거주지역 환경개선사업 지원
10. 고려인 주민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11. 고려인 주민 관련 현안 및 실태조사
12. 고려인 관련 역사 교육 및 홍보 지원
13. 고려인 주민 관련 기념행사 등 지원
1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도 이주 희망 고려인동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고려인동포 지역 현지 유치 활동
2. 도 이주 정착지원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고려인 주민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고려인 주민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려인 주

민 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려인 주민 등을 위한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 교육 및 상담 등
2. 대한민국 국적취득 상담 및 행정서비스 정보제공
3. 고려인 주민 인권보호 및 노동자 권익보호 지원
4. 고려인 주민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고려인 주민 자녀 돌봄 지원 및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알선
6. 고려인 주민 등을 위한 모임 지원 및 통역·번역 지원
7. 도민의 고려인 이해, 상호소통 및 교류를 위한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고려인 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자문위원 또는 협력관 운영) ①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 지원 협력 및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을 자문위원 또는 협력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도의 고려인 주민 지원 협력 관련 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국내외 고려인 관련 단체의 장 또는 임원
 3. 그 밖에 고려인 주민 지원 협력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도지사는 자문위원 또는 협력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 또는 협력관의 역할, 위촉기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4조(기념행사 등) ①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의 통합과 역사적 민족성을 기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고려인 주민의 날(이하 “고려인의 날”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고려인의 날에 고려인동포사회의 자긍심을 높이고 고려인 주민과 도민 간의 유대 강화를 위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기념행사 시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내외 고려인동포를 초청하여 초청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초청된 국외 고려인동포에 관한 경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의 통합과 지역 정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 외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각종 학술대회 및 국제교류 행사
 3. 고려인 주민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5조(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고려인 관련 국제교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외 고려인 단체와 친선결연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 지원 관련 시책 및 교류협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기관·단체 등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 ①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 지원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정이나 지역사회에 공헌한 고려인 주민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은 「충청북도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명예도민) ① 도지사는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고려인 주민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도민으로서의 예우, 명예도민증서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고려인동포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려인동포”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정책의 수립 등) 정부는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거주국 체류자격 취득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국가와의 협력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려인동포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사업 등) 정부는 고려인동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고려인동포의 실태조사
2. 거주국 국적 등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지원
3.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4. 한인문화센터 건립 등 문화활동 지원
5. 한국어 및 정보기술 교육 등 교육활동 지원
6.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등) ① 외교부장관은 제6조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는 외교

부장관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여부의 기준, 심사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충청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고려인 주민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 예산 발생
 - 처우개선, 교육활동, 인권옹호, 생활편의 제공 등
 - 자문위원 또는 협력관 위촉 운영
 - 고려인 초청 및 고려인 주민의 날 기념행사 등

3. 관련조문

- 조례안 제9조(지원사업)
- 조례안 제11조(업무의 위탁)
- 조례안 제13조(자문위원 또는 협력관 운영)
- 조례안 제14조(기념행사 등)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고려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소요 예산

나. 추계 결과

- 고려인 주민 통합지원센터 운영 등 1,875백만원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재원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5년)	2차년도 (26년)	3차년도 (27년)	4차년도 (28년)	5차년도 (29년)	계
세 출		151,000	511,000	451,000	311,000	451,000	1,875,000
고려인 주민 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	500,000	300,000	300,000	300,000	1,400,000
자문위원 또는 협력관 위촉·운영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고려인 초청행사 및 기념행사		150,000	10,000	150,000	10,000	150,000	470,000
재원 조달		151,000	511,000	451,000	311,000	451,000	1,875,000
자체 수입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151,000	511,000	451,000	311,000	451,000	1,875,000

※ 추계 결과 : 1,875백만원(도비 100%)

- 고려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1년차 설치·리모델링 등 포함)
 - * 고려인 사회적응 및 자녀돌봄 등 정착지원사업 및 운영비(2년차 ~)
- 자문위원 또는 협력관 위촉·운영(매년)
 - * 자문수당 100천원 × 5회 × 2명 = 1,000천원
- 고려인 초청행사 및 기념행사(격년, 매년)
 - * 초청행사(격년) 140,000천원
 - * 기념행사(매년) 10,000천원